

제43차 안산대학교 평의회 회 의 록

1. 일 시 : 2018. 1. 23.(화) 오후 2시
2. 장 소 : 본관 2층 회의실
3. 참 석 : 의원 11명(전원참석), 배석1명(김성중 기획처장)

구 분		성 명	참석여부	비고
의 장	기독교대한감리회교인	양 우 석	참석	
부 의 장	교 원	고 윤 배	참석	
의 원	기독교대한감리회교인	박 유 주	참석	
의 원	기독교대한감리회교인	최 현 규	참석	
의 원	교 원	이 현 표	참석	
의 원	교 원	오 종 철	참석	
의 원	교 원	서 수 웅	참석	
의 원	직 원	문 용 국	참석	
의 원	직 원	조 인 선	참석	서기
의 원	총학생회장	최 준 용	참석	
의 원	총동문회장	김 종 성	참석	

4. 개회선언 : 양우석 의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최현규 의원 기도로 제43차 대학평의회 회의를 개회 하다
5. 전 회의록 낭독 : 조인선 의원이 제42차 회의록을 낭독하고 양우석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의 없음을 확인 후 법규에 따라 문용국 의원 동의, 고윤배 의원 재청으로 접수 하다.

서명 양우석 양우석 최현규 최현규 서수웅 서수웅 최준용 최준용	고윤배 고윤배 이현표 이현표 문용국 문용국 김종성 김종성	박유주 박유주 오종철 오종철 조인선 조인선
--	--	--

6. 안건 상정 및 결정

제1호의 안) 2017학년도 대학 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 건

□ 안건상정 및 설명

김성중 기획처장이 회의자료 '제43차 대학평의회 회의자료' 을 토대로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정하였으며 2017학년도 대학교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와 2017학년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평생교육원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안건결정

이에 양우석의장이 참석의원에게 2017학년도 대학교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다.
고윤배 의원) 대학홍보가 중요한데 홍보활동에 배정된 등록금회계 입시홍보비 3억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쓰이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였으며 홍보비로 배정된 예산이 홍보활동에 활용되고 내년도에는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김성중 기획처장) 추경에서 절감된 부분의 경우 특성화비용이나 입시경비에서 사용된 부분이 있고, 홍보와 관련된 부서로 요청내용 전달하겠습니다.

이현표 의원)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할 만큼은 사용되었고 특성화에서 지원되어 교비예산에 대하여 절감을 하지 않았겠는가?

고윤배 의원)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홍보비를 아끼는 것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 후반부의 매스미디어 홍보에 대한 내용 알고 있으나 타대학보다 먼저 사전홍보를 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양우석 의원) 어떤 홍보로 홍보예산이 쓰였는지요?

문용국 의원) 실무담당자는 아니나 2016학년도에는 대학홍보시 라디오광고가 없었으나, 2017학년도에는 CBS 라디오나 JTBC TV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우석 의원) 작년에 비해 발전된 모습이 보이며, 제1호의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문의 후 고윤배의원 동의에 따라 이견이 없으면 전원 “예” 로 답하여 원안대로 자문을 마친다.

제2호의 안) 2018학년도 대학교비예산안

□ 안건상정 및 설명

김성중 기획처장이 제2호의 안에 대하여 2018학년도 대학재정 여건이 정부의 등록금인상 억제 및 대학 입학금 폐지정책 시행, 인건비 상승으로 대학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을 설명하다.

2018학년도 예산편성지침 주요내용은 2017학년도 예산자체분석에 따른 예산절감방향 평가실시에 따른 예산편성 반영, AU VISION 2021정책사업 연계성 검토 후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

서명 양우석 양우석

최현규 최현규

서수웅 서수웅

최준용 최준용

고윤배

이현표

문용국

김종성

박유주

오종철

조인선

산편성, 사업예산제도시행(사업별 코드체계 확립)으로 예산구조의 변경 및 예산서 체계 변경(세입세출중심에서 사업중심), 대학예산편성 단가기준 제정시행(회의비와 강사료는 대학 표준 단가 적용)을 설명하다.

- 대학수입예산의 편성(등록금회계) : 입학금은 정부 입학금폐지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일부감축, 수업료는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97.5% 재학률적용
- 대학지출예산의 편성(등록금회계) : 2017학년도 추정결산을 고려하여 편성, 장학금의 편성(교내, 사설기타)시 등록금수입액의 14.05% 편성
- 예산조정 회의(4회)개최에 따라 부처(기관)별 예산이 조정 및 검토되었고, 학과예산의 조정도 전년도 추정결산대비 7% 감축

전체적으로 2018학년도 교비예산안의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평생교육원회계, 기숙사회계의 규모, 수입예산,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친다.

□ 안전심의

양우석의장이 참석의원에게 2018학년도 대학교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다.

고윤배 의원) 홍보파트 지원에 대해 예산 홍보비 10% 삭감되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지원요청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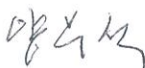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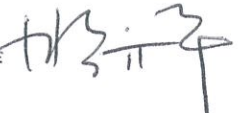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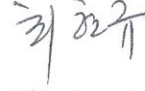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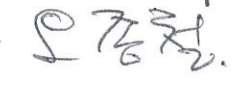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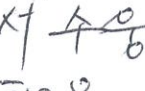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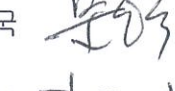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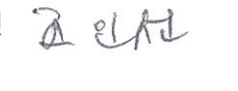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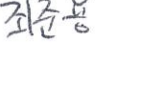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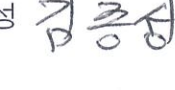
김성중 기획처장) 2018학년도에는 홍보비에 대해 2017년 기준으로 예산을 더 삭감했어야 하나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양우석 의장) 기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문의 후 이견이 없어 고윤배 의원 동의, 문용국 의원 재청으로 제2호의 안을 원안대로 자문을 마친다.

제3호의 안) 대학평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 건

□ 안전상정 및 설명

양우석의장이 3안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여 문용국 의원이 법 인정관 4장 평의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위원회를 두고 이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의 규정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올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가 계획되어 있고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서 60%안에 들어야 자율개선대학으로 교육부에서 지정되고 입학인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자율개선대학으로 갈수 있는 중요한 평가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운영위원회 규정 부분에 대하여 반영, 보완하고자 상정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전체규정에 대해 설명하다.

서명	양우석		고윤배		박유주	
	최현규		이현표		오종철	
	서수웅		문용국		조인선	
	최준용		김종성			

□ 안건심의

이에 양우석의장이 참석의원에게 제3호의 안 대학평의원 운영규정 개정 건 질의를 요청하다.

고윤배 의원) 평의원회 운영규정 개정 건을 평의원 스스로 변경 가능한지와 상위법이 있지 않은지요?

문용국 의원) 정관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대학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정 가능하며, 기타 상위법은 없습니다.

오종철 의원) 규정심의위원회에 따로 심의하지 않고 가능한지요?

김종성 총동문회장) 다른 대학의 규정과 비교검토 되었는지요?

문용국 의원) 대학이나 법인과 별개로 평의원회에서 개정이 가능하며, 다른 대학들의 규정과 검토하였으며 이에 반영해야 할 추가부분을 상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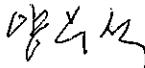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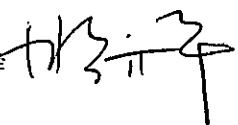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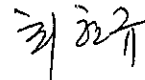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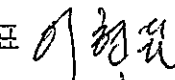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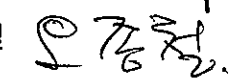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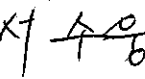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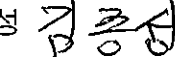
고윤배 의원) 제10조 기밀유지에 대해 취지는 동의하나 시간적 또는 공간적 범위를 정해야 하며, 제12조항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제10조의 항을 삭제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문용국 의원) 기밀유지의 경우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등이 조심스럽고 타대학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있어 우리대학만 특별히 추가된 사항은 아니며,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의원님들께서 결정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8조 2항에 공개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사항이 있으며 개인정보나 공개시 특정인이 이익을 받는 경우나 피해를 보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울러, 실무자를 통해 확인한 바 기획처에서 평의원회 규정개정도 규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오며, 이에 절차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총동문회장) 병원의 경우도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환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고 평의원의 경우도 책임과 의무에 따라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은 어떠한지요?

양우석 의원) 정식으로 의견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의 항을 삭제하는 고윤배의원 안과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거수나 표결에 붙이려고 합니다. 거수보다 의원들께서 표결을 요청하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시 찬성은 제10조의 항을 삭제하고 반대는 원안유지이며, 최종 결과 찬성 4표, 반대 7표로 원안유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문의 후 제3호의 안을 원안대로 자문을 마칩니다.

서명	양우석		고윤배		박유주	
	최현규		이현표		오종철	
	서수용		문용국		조인선	
	최준용		김종성			

제4호의 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 제정 건

□ 안건상정 및 설명

양우석의장이 제4호의 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여 문용국 의원이 안산대학교 평의원회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시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대학기본 역량진단평가에 대비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며 이에 관련 내용전문을 읽고 설명하다.

□ 안건심의

양우석의장이 참석의원에게 제4호의 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 제정 건 질의를 요청하다.

오종철의원) 위원회명칭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나 내용에 개방임원으로 되어 있어 개방임원 추천위원회가 더 맞는 명칭이 아닌지요?

문용국의원) 사립학교법에 있는 내용으로 임의대로 명칭 변경이 불가하며 상위법에 따라 기재된 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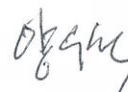
양우석 의장이 기타 이견 유무를 묻고 박유주 의원 동의, 최준용 의원 재청으로 제4호의 안을 원안대로 자문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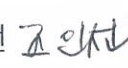
7.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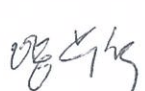
■ 양우석 의장이 기타 추가의견의 유무를 묻고,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 후 제43차 대학평의원회 폐회 동의를 요청하고 박유주 의원 동의 및 최현규 의원 재청으로 제43차 평의원회 회의를 마친다.

위와 같이 이상 없음을 확인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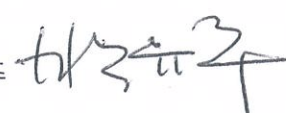
2018. 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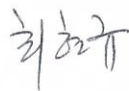
확인자: 대학평의원회 의장 양 우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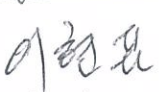
작성자: 대학평의원회 서기 조 인 선 

서명 양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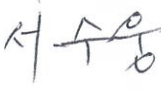
고윤배 

박유주 

최현규 

이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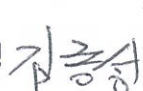
오종철 

서수웅 

문용국 

조인선 

최준용 

김종성 

안 산 대 학 교 총 장 귀하